

 국토교통부		<h1>보 도 자 료</h1>	
		배포일시	2018. 10. 5(금) / 총2매(본문2매)
담당 부서	자동차정책과	담당자	과장 이상일, 사무관 유연형, 주무관 황우관 ☎ (044) 201-3843, 3844
보 도 일 시		2018년 10월 8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8.(월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재규어 XF 등 5개 차종 1만6천 여대 리콜 실시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(주)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5개 차종 16,022대에 대해 시정조치(리콜)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- 리콜대상은 2010년식부터 2016년식까지 3.0 디젤엔진이 장착된 XF·XJ·레인지로버 등 5개 차종 16,022대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.

< 리콜 대상 자동차 >

차명	제작일자	대상대수
재규어 XF	'10.1.11 - '16.3.5	1,369
재규어 XJ	'10.3.25 - '16.8.31	1,630
디스커버리4	'09.9.8 - '16.9.15	8,471
레인지로버	'12.6.15 - '15.9.16	205
레인지로버스포츠	'09.4.27 - '16.10.25	4,347

- 이번 리콜은 국토교통부 지시에 따른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 및 제작결함심사위원회 개최(9.18일) 결과 “디젤엔진 크랭크축 소착 결함으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, (주)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지난 10.2일 결함원인, 시정대상 대수 및 시정방법 등에 관한 리콜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.

○ 해당차량은 10월 29일부터 (주)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전액무상으로 점검 후 불량여부를 판정하여 문제가 있는 엔진은 신품 엔진어셈블리로 교체하게 되며 점검은 약 1시간, 신품 엔진어셈블리교체는 약 16시간이 소요된다.

□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10.8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,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*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.

* 자동차제작자들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(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)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

○ 기타 궁금한 사항은 (주)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(080-894-1000)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·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(www.car.go.kr, 080-357-2500)를 운영하고 있으며,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.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유연형 사무관(☎ 044-201-384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